

# 재래시장 화재 사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상품을 흥정하는 재래시장이 최근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재래시장의 화재의 원인과 현황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결점을 제시해본다.

글 | 김인태 협회 위험조사부 차장, 공학박사



## 1. 머리말

사전적 의미에서 시장(市場)은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상품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재래시장’이라 함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2절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환경 개선의 촉진에 따라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을 개선하거나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전주를 이설하거나 지중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바 없으나 제2조 4호의 ‘임시시장’에 대한 용어정의를 차용하면,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라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규모점포 업체에 의하면 다수의 점포에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관점에서의 정의와는 달리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재래식 시장은 오래 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던 장터로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과 다른 서민 중심의 장이며, 온라인 거래와 같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단지 물품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닌 주인과 직접 물건 값을 흥정하는 장이며, 손님과 주인이 바로 이웃이어서 정을 주고 받는 장인 것이다. 이러한 재래식 시장에는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이 있으며, 서민들의 애환과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으나 화재와 같은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 2. 재래식 시장의 화재위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재래식 시장은 2006년 4월 현재 1,700여 개가 있으며, 대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재래식 시장은 1950년대 또는 그 이전부터 상설시장으로 형성된 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면서 유통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은 남대문과 동대문을 중심으로 재래식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부산의 국제시장과 부전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대전의 중앙시장 등이 대표적인 재래식 시장이다.

그동안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울의 동문상가와 대구의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다. 특히 동문상가는 2005년 12월 1일 새벽 6시경 4층 전기 피트에서 발화되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과거 재래식 시장의 사고사례를 토대로 화재위험 및 상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붕괴위험

- 소방시설의 관리 미흡
- 배관 및 전선 관통부 주위 개구부 방화구획 미흡
- 가연성 내장재 사용 및 천막지붕으로 인한 연소확대 위험
- 계단 및 통로에 물품을 적재하여 피난 제한
- 개별난방으로 인한 동절기 화기시설 증가
-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구조 사다리차 및 소방차의 진입 곤란
- 도로 위에 설치된 전선으로 인하여 화재진압 차질
- 보험 미가입 또는 일부보험으로 인한 사후 대책 곤란

## 3. 화재사례

### 가. 일반 사항

- 화재일시 : 2005. 12. 29. 21:57경
- 발화장소 : 대구 서문시장
- 발화지점 : 제2지구 1층 한복원단 주변
- 화재원인 : 전기합선 추정
- 재산피해 : 수백 억원 추정

### 나. 건물 현황

서문시장은 4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구는 별도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제 2 지구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며, 옥상에는 패널구조의 사무실(280㎡)이 있었다. 197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이다. 지하 1층은 식

당가와 대형마트가 입주, 지상층은 2~4평 규모의 점포가 975개 있었으며 대부분 침구, 원단, 의류, 포목을 취급하고 있었다. 건물은 가로 122m, 세로 45m의 직사각형 구조로서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각 점포마다 셔터가 설치되어 진화작업이 늦어지게 되었다.

**다. 소방시설 현황**

소방시설로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방송설비가 있었다. 또한 피난설비로는 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화재 당시 건물 1~2층과 2~3층 사이의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 화재원인 및 현황**

제2지구 1층 내부 침구점포 부근의 천장 4곳과 한복원단 가게 앞 복도 1곳에서 전선이 끊어지고 녹아내린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누전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다.

■ <표 1> 서문시장 화재 이력

순번	사고일시	원 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비 고
			사망	부상		
1	1951. 10. 20 02:02	미상				
2	1951. 02. 04	실화	1			
3	1957. 12. 26 22:14	실화		3		
4	1960. 02. 05 22:14	미상				
5	1960. 06. 16 12:23	유류		34	4,687,790	(금액 단위 : 천환)
6	1961. 02. 15 12:40	미상		1		
7	1967. 01. 01 13:00	유지관리	1		236,000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
8	1968. 11. 03 03:30	실화			98,060	
9	1975. 11. 20 21:30	담뱃불			2,571,770	건물골조 붕괴, 소방시설 미비, 셔터로 진압곤란(6,730,000천원)
10	1976. 12. 17 19:35	실화		5	1,141,800	강풍과 산적한 상품들로 연소 확대, 700여 점포 소손
11	1980. 03. 25	실화			443	
12	1981. 02. 03	유지관리			5,150	
13	1981. 06. 10	미상			2,431	
14	1982. 02. 21	미상			2,480	
15	1982. 12. 05	실화			250	
16	1986. 03. 02	실화			50	
17	1995. 12. 03 22:21	미상			5,000	시장 점포에 적재된 이불 등 소손, 원인 미상
18	1996. 08. 25 10:45	실화			5,000	신원 미상인이 버린 담뱃불로 추정
19	1997. 04. 30 19:20	유지관리			130,000	점포 10개 소실, 강풍으로 진화 곤란.3시간 만에 진화
20	2005. 12. 29 21:57					

※ 피해액은 소방서 산출금액으로서 사고당시 기준임. ※ 1961년 화폐개혁 이전 금액 단위는 환임.



■ 사진 1. 서문시장 배치도



■ 사진 2. 최종 잔화 정리 현장



■ 사진 3. 옥상 슬래브 붕괴 모습

사고당시 상가 내부 전원 중 각층 통로등, 각 층별 관리원실, 1층 일부 점포의 냉장고, 지하 1층 벨마트와 식당 가는 전원이 통전 중이었으며, 1, 2, 3층 개별 점포 내부 전원은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장 조사 결과 2지구의 발화 원인은 범진 홈패션 점포 통로바닥 및 천장 트레이에 설치된 전선에서 배전반 방향으로 다수의 단락흔이 식별됨에 따라, 노후된 전선의 합선으로 순간적으로 발생한 고온의 아크열이 전선피복 및 분진 등의 가연물에 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 신고자인 2층 경비원(59세)의 진술에 의하면 “1층 점포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초기소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22시 5분경에 119로 신고하였다.”고 한다. 인근에 있던 소방파출소에서 바로 진화에 나섰으나 인화성이 높은 섬유물질로 불길이 번져 초기진화에 실패하였으며, 대구시 소방본부는 소방차 116대와 인력 1,10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자정쯤 진화하였으나 곧 재발화하여 2~3층으로 확산되었다.

건물 붕괴위험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건물 내부로 소방관이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완전히 진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당시 안전자문단은 소방인력의 내부 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실을 소방당국에 통보, 건물 바깥에서 계속 진화를 시도하되 내부의 원단 등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릴 것을 당부하였다. 최종

잔화 정리는 화재 발생 다음날인 12월 30일 17시 57분에 마무리되었다.

#### 마. 피해 상황

전체 연면적의 70%인 700여 개 점포가 소실되었으며, 나머지 부분도 연기와 수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 당시 대부분의 상인들이 연말 및 설 대목장을 노려 재고량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산 피해는 수백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대구시와 중구청이 화재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결과 ‘건물 내부 일부가 붕괴되고 추가 붕괴가 예상돼 구조물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됨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다행히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건물 내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 바. 문제점

##### (1) 가연성 내장재

내장재는 석고보드를 사용하였으나, 점포 칸막이 벽 등 일부에는 합판을 사용하여 연소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 (2) 소방시설

옥내·외 소화전을 비롯하여 건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소 확대**

파이프 관통부, 환기설비가 구획되지 않았으며, 방화문 및 철골 셔터 구조가 미흡하여 연소 확대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였다.

**(4) 소화활동 조건**

인근 100m에 소방파출소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재래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진입로가 협소하고 도로에 물

진이 적재되어 있어 소화활동에 장애가 있었다.

**(5) 보험사항**

시장 전체는 94억 5천만원의 재물보험이 가입되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라고 있다. 10여 개 점포는 별도의 보험사에 총 1억원 정도의 동산보험을 가입하여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유통 산업 발전법**

**제 2조 (정의)**

-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입태(제3조관련)**

**1. 할인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시장**

다수의 점포에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정의)**

-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 나.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제 6조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형 부 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환경개선사업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바리개,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신속 또는 증축

**제 8조 (전주 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되어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전주를 이설하거나 지중에 설치하고자 이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그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은 동법 제72조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